

## 직원 보수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~6: (생략) 7: "제수당"이라 함은 법정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보직수당, 기타수당을 말한다. (개정: 2008.9.16) (개정 2018.3.1)	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~6: (현행과 동일) 7. "제수당"이라 함은 법정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보직수당, <b>육아휴직수당</b> , 기타수당을 말한다.	육아휴직수당 신설
(신설)	<b>제 26 조(육아휴직수당) ①육아휴직한 직원에게는 교육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.</b> <b>②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교육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.</b>	
제26조(기타수당): 생략 제27조(준용규정): 생략	제 <b>27</b> 조(기타수당): 현행과 동일 제 <b>28</b> 조(준용규정): 현행과 동일	
	<b>부칙</b> <b>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개정. 시행한다.</b> <b>2. (경과조치) 제 26 조(육아휴직수당)와 관련하여,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본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.</b>	